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 - 72호

임실군의회 김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임실군의회 의장



1. 제정이유

모든 임실군민에게 재산, 소득, 노동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을 지급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아가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라.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2025년 11월 17일까지
-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실군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모두에게 재산·소득·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을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임실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3. “군민”이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규모, 시기 등 지급에 관한 기준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 및 자원 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의 군수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범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추진 전략
2.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등의 선정·결정 기준
3. 소요 예산 및 자원 조달 방안

4. 성과 평가 계획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④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에 따라 정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경제·사회·농업 등을 담당하는 실·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업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
3. 그 밖의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서면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회 회신과 서면심의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기본소득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수집·보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김정흠 의원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

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